

『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(안 제8조)
-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는 근거 신설(안 제8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 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- 본 『구미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
 - 용어 정리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 농업·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공급하는 근거 신설을 위하여,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.